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3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이상휘・이헌승・최수진

김정재 · 김태호 · 김성원

박대출 · 임이자 · 신성범

박준태 • 박성훈 • 김장겸

이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 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 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 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7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	제39조(벌칙) ①
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	
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	
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u>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u>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